

제2527호
2017. 07. 05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편집인: 공 보 실 장 류 용 결
전화: 3396-496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 의 장
람	

구 보

- 고 시
- 제2017-50호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고시 2
- 제2017-51호 : 무교·다동구역 제3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공사완료 고시 6
- 제2017-52호 :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8
-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고시 제2017-2호 : 명동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이전 정정 고시 9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65 / FAX.(02)3396-9024

● 구보는 수시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50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승인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1조(목적)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간의협의기구인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에 관한사항
2.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3.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협의회는“별표”의 지방정부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정부의 장이 된다.

제4조(임원 및 조직)

- ① 협의회에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 감사 2인, 고문 등을 두며 임원진

외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자문단 등을 구성할 수 있다.

- ② 회장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고, 부회장과 감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부회장은 1권역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④ 협의회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과 협의회장이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5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 ② 회원인 지방정부의 장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부단체장이 대리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 개시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 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는 정기회의로 구성된다.
- ②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협의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한 회원이 사전에 대표 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며 의결사항에 따른다.
-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의안의 제출)

- ① 회장은 회의개최 30일 전까지 각 지방정부의 아동친화도시 관계기관 및 각 회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회원에게 송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사항을 종합하여 차기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등)

- ① 협의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소속 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은 회장 소속 자치단체에서 주관한다.
-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2조(경비부담)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유니세프와 참여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하며, 협의회는 이를 위해 지자체 별 연회비를 책정할 수 있다.

제13조(회계보고 및 결산)

-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협의회는 회계는 사무국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6조(가입 및 탈퇴)

- ①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한다.
- ② 본 협의회에 가입한 단체는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가지며,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다하여야 한다.
- ③ 본 협의회에 가입한 단체는 본 협의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 협의회 의 의무사항을 2년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탈퇴 처리한다.

【별 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명부

(2017. 5월 기준, 총 42개 지자체)

지역	자치단체명	비고
강원(0)	-	
경기(5)	광명시, 오산시, 수원시, 시흥시, 화성시	
광주(4)	광주광역시, 북구, 서구, 동구	
경남(0)	-	
경북(2)	구미시, 영주시	
대구(1)	중구	
대전(1)	유성구	
부산(2)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울(1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송파구, 강서구, 강동구, 성동구, 금천구, 종로구, 서대문구, 광진구, 강북구	
인천(2)	서구, 동구	
전남(2)	광양시, 순천시	
전북(3)	완주군, 군산시, 전주시	
충남(4)	아산시, 당진시, 보령시, 논산시	
충북(2)	음성군, 충주시	
세종(1)	세종특별자치시	

●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7- 51호

무교·다동구역 제3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공사완료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368호(1973.09.06.)로 정비구역 지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37호(2010.04.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53호(2013.12.26.),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4-112호(2014.12.26.)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4-43호(2014.05.28.)로 사업시행인가 및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5-34호(2015.05.27.),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6-67호(2016.6.22.)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우리구 을지로1가 101-1번지 일대 무교·다동구역 제3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에 따라 준공인가 처리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일

서울특별시중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무교·다동역 제3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2.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01-1번지 일대 / 3,946.1㎡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하나은행 (대표이사 함영주)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4. 준공인가일 : 2017. 6. 30.
5. 정비사업 준공인가 내역
 - 가. 토 지

시행면적(㎡)	대지면적(㎡)	정비기반시설(㎡)		비 고
		합 계	공 원	
3,946.1	3,518.8	427.3	427.3	

※ 추후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나. 건축시설

구 분	규 모	비 고
건축면적	1,935.15㎡	건폐율 : 54.99%
연 면 적	53,981.06㎡	용적률 : 1,083.00%
층 수	지하6층, 지상26층	높이 : 109.95m
용 도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정비기반시설

종 류	명 칭	위 치	면적(㎡)	귀속청	비 고
공원	다동공원	다동 51번지 일대	427.3	서울특별시 중구	
계			427.3		

6.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시 의제 처리된 각 개별법에 정하여진 신고 또는 허가사항은 같은법 제53조에 따라 본 사업 준공인가에 따라 준공검사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

●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7 -52호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인

지적도근점 번호	평면좌표(GRS80 타원체)		평면좌표 (베셀타원체)		소재지
	종선좌표 (X)	횡선좌표 (Y)	종선좌표 (X)	횡선좌표 (Y)	
9422	552051.57	198255.18	451745.69	198184.23	다동 51-29
9423	552059.34	198284.47	451753.46	198213.52	다동 51-10
9424	552060.14	198303.36	451754.26	198232.41	다동 33-5

기준원점명	중부원점	
설치일	2017년 6월 7일	
표지의재질	표철	
측량성과보관장소	서울특별시 중구청 토지관리과	
비고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성과	

※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2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고시 제2017-2호

명동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이전 정정 고시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고시 제2017-1호(2017.6.14.)로 이전고시 된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1가 114번지 일대 “명동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이전고시” 내용 중 착오 기재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고시내용 정정합니다.

2017년 7월 5일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대표이사 이창희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명동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지적확정측량 결과에 의함)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1가 48번지 일대

○ 면 적 : 4,141.5㎡(대지면적 : 2,991.5㎡, 정비기반시설면적 : 1,150.0㎡)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대표이사 이창희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4층(역삼동, 그레이스타워)

라.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일 : 2013. 11. 27.(최초), 2017.05.17.(최종변경)

마. 공사완료 고시일 : 2016. 09. 29.

바. 이전고시 내역

○ 사업시행면적

종 전			확 정		
대지면적		2,991.5㎡	대지면적		2,991.5㎡
정비기반시설	도로	58.6㎡	정비기반시설	도로	58.6㎡
	공원	1,087.7㎡		공원	1,091.4㎡
계		4,137.8㎡	계		4,141.5㎡

○ 건축시설의 종류 및 규모

- 용도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 높이(층수) : 119.95m (지상26층/지하7층)

- 건축면적 : 1,775.33㎡

- 건축연면적 : 53,369.33㎡

※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대상자별 세부내역(이전고시 대상면적) : 별첨

○ 토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대상자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토지

순 번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이전설정되는소유권 이외의권리명세		비 고
					종목	권리자	
1	을지로2가 211	대지	146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	대지
2	저동1가 114	대지	2,845.5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	대지
3	저동1가 115	도로	24.5	서울시 중구	-	-	무상귀속 공공용지
4	저동1가 116	도로	3.2	서울시 중구	-	-	"
5	저동1가 117	도로	2.7	서울시 중구	-	-	"
6	저동1가 118	도로	28.2	서울시 중구	-	-	"
7	저동1가 119	공원	50.1	서울시 중구	-	-	"
8	저동1가 120	공원	500.6	서울시 중구	-	-	"
9	저동1가 121	공원	540.7	서울시 중구	-	-	"
계			4,141.5				사업시행 완료면적

- 건축시설

구 분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문화및집회시설(m ²)	비고
계	53,369.33	
토지등소유자	24,651.53	
체비지	28,717.80	
보류지	-	

-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처분내역 : 없음

사. 정정내용 :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대상자별 세부내역(이전고시 대상면적) - 별첨

아. 정정사유 : 토지분할 및 오기에 의한 정정

자. 관련서류 : 생략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4층(역삼동, 그레이스타워)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비치서류와 같음]

별첨.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대상자별 세부내역(이전고시 대상면적) : 변경 전

연 번	소유자	종전의 토지 및 건물						비고	분양 예정의 대지 및 건물					청산 징교부 적수		비고	
		지번	토 지(m ²)		건 물(m ²)				소유자	지번	토 지(m ²)		건 물(m ²)	징수 교부			
			지목	지적	구조	용도	면적				지목	대지지분		분양면적			
1	(주)하나자산신탁	을지로2가168-32	대	65.20					(주)하나자산신탁	을지로2가211, 저동1가114	대	1,381.79	24,651.53				
		을지로2가 168-33-1	대	1.80													
		을지로2가 168-34	대	7.40													
		을지로2가 1638-41	대	8.00													
		저동1가43-3	대	26.40													
		저동1가43-6	대	65.50													
		저동1가48	대	2,150.60		근생시설	4,758.30										
		저동1가48-19	대	17.30													
		저동1가67-1	대	45.60		근생시설	249.20										
		저동1가73-2	대	0.80													
		저동1가79-1	대	165.30		근생시설	164.80										
		저동1가79-3	대	64.50													
		저동1가79-6	대	19.80													
		저동1가79-7	대	16.90		주택	74.40										
		저동1가79-10	대	2.90													
		저동1가84	대	46.30													
		저동1가87	대	165.30		주택	344.10										
		저동1가88	대	49.60		근생시설	79.30										
		저동1가88-1	대	17.90													
		저동1가90-5	대	66.10		근생시설	720.60										
		저동1가91-4	대	185.80		근생시설	39.70										

연번	소유자	종전의 토지 및 건물						비고	분양 예정의 대지 및 건물						청산 징교부 적수		비고
		지번	토 지(m ²)		건 물(m ²)				소유자	지번	토 지(m ²)		건 물(m ²)	징수	교부		
			지목	지적	구조	용도	면적				지목	대지지분				분양면적	
		저동1가92-1	대	139.80													
		저동1가 92-2	대	179.50		근린생활시설	142.20										
		저동1가90-10	대	148.80		근린생활시설	347.10										
		저동1가90-1	대	63.50													
		저동1가87-3	대	11.60													
		저동1가92-3	대	186.80		근린생활시설	196.30										
		저동1가 72-5	대	3.20													
		저동1가 72-7	대	2.70													
		저동1가 90-11	대	19.80													
		저동1가 91-3	대	3.10													
		저동1가 39-3	대	1.20													
		저동1가 46	대	0.20													
		저동1가 84-1	대	46.30													
소계				3,995.50			7,116.00		환 지 소계			1,381.79	24,651.53				
2	서울시	저동1가72-2	도	57.40					체비지(사업시행자)	을지로2가211, 저동1가114	대	1,609.71	28,717.80				
	서울시	저동1가77-3	도	10.10					서울시 중구	저동1가121번지	공	540.70					
	서울시	을지로2가148-135	도	46.00						저동1가120번지	공	500.60					
	중구	을지로2가168-51	도	8.60						저동1가119번지	공	50.10					
소계				122.10					저동1가118번지	도	28.20						
계				4,117.60					저동1가115번지	도	24.50						
확정예정측량으로 인한 면적정정				4,141.50					저동1가116	도	3.20						
									저동1가117	도	2.70						
										소계	1,150.00						
총 계				4,117.60			7,116.00		총 계			4,141.50	53,369.33				

별첨.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대상자별 세부내역(이전고시 대상면적) : 변경 후

연번	소유자	종전의 토지 및 건물					비고	분양 예정의 대지 및 건물					청산 징교부 적수		비고	
		지번	토 지(m ²)		건 물(m ²)			소유자	지번	토 지(m ²)		건 물(m ²)				
			지목	지적	구조	용도				면적	지목		대지지분	분양면적		
1	(주)하나자산신탁	을지로2가 168-32	대	65.2				오기에 의한 지번정정	(주)하나자산신탁	을지로2가211, 저동1가114	대	1,381.79	24,651.53			
		을지로2가 168-33	대	1.8												
		을지로2가 168-34	대	7.4												
		을지로2가 168-41	대	8.0												
		저동1가 43-3	대	9.1				분할에 의한 정정								
		저동1가 43-14	대	17.3				분할에 의한 정정								
		저동1가 43-6	대	54.5				분할에 의한 정정								
		저동1가 43-15	대	11.0				분할에 의한 정정								
		저동1가 48	대	2,150.6		근생시설	4,758.30									
		저동1가 48-19	대	17.3												
		저동1가 67-1	대	23.8		근생시설	249.20	분할에 의한 정정								
		저동1가 67-7	대	21.8				분할에 의한 정정								
		저동1가 73-2	대	0.8												
		저동1가 79-1	대	7.7		근생시설	164.80	분할에 의한 정정								
		저동1가 79-12	대	157.6				분할에 의한 정정								
		저동1가 79-3	대	21.8				분할에 의한 정정								
		저동1가 79-13	대	42.7				분할에 의한 정정								
		저동1가 79-6	대	19.8												
		저동1가 79-7	대	16.9		주택	74.40									
		저동1가 79-10	대	2.9												
		저동1가 84	대	28.4				분할에 의한 정정								
		저동1가 84-2	대	17.9				분할에 의한 정정								
		저동1가 87	대	165.3		주택	344.10									
		저동1가 88	대	17.7		근생시설	79.30	분할에 의한 정정								
		저동1가 88-2	대	31.9				분할에 의한 정정								
		저동1가 88-1	대	17.9												
		저동1가 90-5	대	66.1		근생시설	720.60									

연번	소유자	종전의 토지 및 건물						비고	분양 예정의 대지 및 건물						청산 청교부		비고
		지번	토 지(m ²)		건 물(m ²)				소유자	지번	토 지(m ²)		건 물(m ²)	적수			
			지목	지적	구조	용도	면적				지목	대지지분		분양면적	징수	교부	
		저동1가 91-4	대	1.2		근생시설	39.70	분할에 의한 정정									
		저동1가 91-6	대	184.6				분할에 의한 정정									
		저동1가 92-1	대	139.8													
		저동1가 92-2	대	179.5		근린생활시설	142.20										
		저동1가 90-10	대	148.8		근린생활시설	347.10										
		저동1가 90-1	대	10.7				분할에 의한 정정									
		저동1가 90-13	대	52.8				분할에 의한 정정									
		저동1가 87-3	대	11.6													
		저동1가 92-3	대	186.8		근린생활시설	196.30										
		저동1가 72-5	대	3.2													
		저동1가 72-7	대	2.7													
		저동1가 90-14	대	19.8				분할에 의한 지번정정									
		저동1가 91-7	대	3.1				분할에 의한 지번정정									
		저동1가 39-5	대	1.2				분할에 의한 지번정정									
		저동1가 46-3	대	0.2				분할에 의한 지번정정									
		저동1가 84-1	대	46.3													
소계				3,995.5			7,116.00	환 지 소계				1,381.79	24,651.53				
2	서울시	저동1가72-2	도	57.4					체비지(사업시행자)	을지로2가211, 저동1가114	대	1,609.71	28,717.80				
	서울시	저동1가77-3	도	10.1						서울시 중구	저동1가121번지	공	540.70				
	서울시	을지로2가148-135	도	46.0							저동1가120번지	공	500.60				
											저동1가119번지	공	50.10				
소계				122.1					저동1가118번지	도	28.20						
계				4,117.6					저동1가115번지	도	24.50						
확정예정측량으로 인한 면적정정				4,141.5					저동1가116	도	3.20						
									저동1가117	도	2.70						
									소계		1,150.00						
총 계				4,141.50			7,116.00		총 계		4,141.50	53,369.33					